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원자원 정의 신설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 기준 추가 등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5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공원자원 정의 및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홍보 의무 신설 등	4
2.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준 추가 등	7
※ 참고자료	13
1.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13
2. 공원보호협약	14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21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으로서의 공원자원을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함(안 제2조, 제3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존·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존·관

리·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라.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Ⅲ. 검토의견

1. 공원자원 정의 및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홍보 의무 신설 등

개정안은 ①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며, ③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하는 조사를 자연자원 조사에서 공원자원 조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3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u>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 관리청은 자연공원의 <u>자연자원을</u>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u>자연자원</u>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 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 ----- <u>공원자원</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공원자원</u>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하고¹⁾,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시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²⁾

다만, 법 제15조 및 제17조의³⁾과 자연공원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사

1)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이하 각 호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

용되고 있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자연공원에 대한 조사가 ‘자연자원’으로만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공원자원 관리가 저해되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탄소흡수 및 기후조절, 홍수 및 산사태 완화, 관광 및 지역소비 등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그 가치에 대한 홍보가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며, 공원 내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하는 것으로,⁴⁾ 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원’의 정의가 부재하므로 신설이 필요하고(안 제2조), 현재 관리 중인 체계 내에서 국립공원(국가), 도·군립공원(지자체)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 필요하며(안 제3조제3항),

자연공원의 동·식물 등 자연자원뿐 아니라 문화자원 및 자연·문화경

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관리계획

- 4) 참고로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현행 법 제36조와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해당 지침에는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조사와 자원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공원자원조사분야의 조사유형으로 ‘경관자원과 문화자원(경관 및 문화), ‘인문환경(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참조

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전체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안 제36조제1항)는 입장을 제출함.⁵⁾

2.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준 추가 등

개정안은 ①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②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용도지구) ① (생략)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삭제	
6. 공원문화유산지구	6. —————

5) 다만, 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법 제36조의 조문 제목을 “자연자원의 조사”에서 “공원자원의 조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가.·나. (생략) <u><신설></u>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u>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③ 삭제 ④·⑤ (생략)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u>환경개선에 관한 비용</u> 3.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u> 라. ----- <u>보전·관리 및 이용을</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조) ----- ----- -----. 1. (현행과 같음) 2. ----- ---- <u>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 되는</u> --- 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의 효과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각 용도지구 유형별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⁶⁾.

6)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각 호 생략)

[용도지구 지정현황]

(단위 : km²)

구분	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면적	6,888	1,610 (23.4%)	5,241 (76.1%)	24 (0.3%)	14 (0.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한정되어 지구 내 문화적 자원이 가진 가치의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사찰이 가진 문화경관의 가치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이하 각 호 생략)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이하 각 호 생략)

3. 공원마을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이하 각 호 생략)

4~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2025.11.24.) 참조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경관이 지닌 가치증진과 활용가능성 제고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43조제2호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 및 방재 시설설치로 규정되어 있고,⁸⁾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탐방로 정비·복원 등 국립공원 문화 경관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⁹⁾ 법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¹⁰⁾

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매년 공원 내 전통사찰에 34억원의 환경개선(유지보수)비용을 지원 중이고, 2026년 정부안 기준 탐방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587백만원, 탐방로 정비 및 복원사업에 15,77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0) 해당 기획예산처의 의견에 대하여 기후부도 현행 「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43조(보조) 등에 따라 사찰림 훼손지 복원, 탐방로, 전망대, 쉼터 조성 등 국립공원 문화경관 가치증진 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조문의 ‘환경개선’은 자연환경 뿐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 문화유산 등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관 등 인문환경을 포함한 환경의 보전·관리 및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증진 행위 지원은 현행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법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 「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2. 공원보호협약> 참조

※참고자료 1.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 자연자원의 조사(법 제36조)

○ (조사 대상·주기)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 ②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운영 지침('20.3.9., 국립공원공단)

○ 자연자원조사 : 공원자원조사와 자원모니터링

① 공원자원조사 분야

조사유형	조사유형 세분류		조사분야
1. 자연생태계	육상생태계(11)	산림(6)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류
		담수(10)	식물상,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담수조류, 수리수문(습지구조)
		하천(6)	파충류, 양서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수리수문(하천구조)
	해양생태계(16)		해저지형, 기질,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어류, 절지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대형동물, 자포동물, 극피동물,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 해조류, 해초류, 염생식물
2. 경관 및 문화	경관자원(2)		경관, 지형
	문화자원(2)		고고역사, 민속자원
3. 지속가능한 이용	인문환경(3)		일반현황(관리여건 등), 이용현황(탐방객, 시설 등), 교란요인(빛, 소음, 훼손지 등)

② 자원모니터링 분야

조사유형	조사유형 세분류		조사분야
1. 자연생태계	육상생태계(5)	산림(2)	특정식물, 포유류
		담수(3)	수질, 담수어류, 저서무척추
	해양생태계(2)		해안사구, 조간대생물
2. 서식지 관리	보전/복원(2)		특별보호구역, 훼손지복원
	교란/위해(3)		생태계교란생물, 유기방사동물, 로드킬 및 생태통로
3. 기후변화	산림생태계(2)		생물계절, 아고산생태계
	도서생태계(2)		바닷새 번식 및 먹이원, 바닷새 번식지 환경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 2. 공원보호협약

□ 기본 개념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자연·문화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 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협약

□ 추진 근거

-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

□ 사업 시행기관 및 협약 상대방

- **(시행기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국립공원공단
- **(협약 상대방)**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지상권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지상권자 및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소유자·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활동 지원사항

- 국립공원 자연·문화경관의 **가치증진** 및 **보전·관리 활동 지원**
 - **(사찰림 등 문화경관 가치증진)** 사찰림 훼손지 복원 및 자연환경보호
 - **(사찰림 훼손지 복원)** 자생종 식재·복원(국립공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찰)
 - **(휴식공간 조성)** 산책로·쉼터 조성(국립공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찰)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울타리 설치비 지원*(국립공원), 엽구수거 등 국립공원 보호활동 참여(주민)
 - **(생태농업 지원)** 친환경비료 및 농자재 지원, 농약잔류검사(국립공원), 무농약 등 친환경 경작, 수질오염 예방 활동 참여(주민)

붙임
공원보호협약 활동유형 분류

사업 유형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경관 보전 · 관리	가. 경관 유지·관리	1. 자연경관 유지·관리	01.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02.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2. 문화경관 유지·관리	03. 비지정문화자원 보호
			04. 공원마을 경관개선 (경관 유지)
	나. 경관 훼손·오염 예방	1. 자연경관 훼손·오염예방	05. 미사용 토지 자생종 증식장 조성
			06. 친환경 경작(비료 지원)
		2. 문화경관 훼손·오염예방	07. 문화경관 훼손 감시 활동
		3. 자연·문화경관 훼손·오염예방	08. 풍수해, 화재, 산림병해충 등 재난 예방
경관 가치 증진	가. 경관 복원	1. 자연경관 복원	09. 훼손지 복원
			10. 자연경관 저해시설 제거·정비
		2. 문화경관 복원	11. 옛길 복원
			12. 문화경관 저해시설 제거·정비
	나. 경관 인식증진	1. 자연경관 인식증진	13. 생태탐방로, 경관전망대 조성 및 유지·관리
		2. 문화경관 인식증진	14. 향토 민속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15. 문화자원 탐방로 조성 및 유지·관리
		3. 자연·문화경관 융합 인식증진	16. 공원 치유·교육프로그램 운영

붙임
공원보호협약 추진현황

구 분		세부내용	사업비(백만원)
총 계		524개소	2,432
2015	소 계	63개소	141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52개소 일 반 펜 스 11개소	141
2016	소 계	34개소	124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18개소 일 반 펜 스 12개소 경음경광기 4개소	124
2017	소 계	118개소	198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39개소 일 반 펜 스 14개소 경음경광기 66개소	198
2018	소 계	45개소	247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7개소 일 반 펜 스 29개소 와이어헨스 1개소 경음경광기 8개소	247
2019	소 계	72개소	284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10개소 일 반 펜 스 39개소 와이어헨스 2개소	244
	생태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22개소	40
2020	소 계	44개소	196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2개소 일 반 펜 스 15개소 와이어헨스 8개소	176
	생태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19개소	20
2021	소 계	46개소	190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3개소 일 반 펜 스 26개소	177
	생태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17개소	13
2022	소 계	40개소	165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 반 펜 스 25개소	160
	생태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15개소	5
2023	소 계	19개소	187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 반 펜 스 19개소	187
2024	소 계	17개소	300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 반 펜 스 11개소	97
	생태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2개소	3
	사찰의 경관가치 증진 시범사업	혜손지 복원 2개소 힐링공간 조성 2개소	100 100
2025	소 계	24개소	400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 반 펜 스 16개소	97
	생태농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2개소	3
	사찰의 경관가치 증진 사업	혜손지 복원 3개소 힐링공간 조성 3개소	150 150

붙임 공원보호협약 사례

□ 사찰림 경관 가치증진 사례



무위사 훼손지 복원(월출산)



내장사 휴식공간 조성(내장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례(월악산)



설치 전



설치 후

□ 생태농업 지원 사례



유기농 비료 지원



농약 잔류 검사 시료
채취



농약 잔류 검사결과
설명회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